

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부의안건 공고

「지방자치법」 제55조의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에 부의할 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4년 4월 17일

###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장

부의안건명	주관부서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지역경제과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	세무1과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문화시설 등 셔틀버스 운영 조례안	교통행정과
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	도로과
서대문구와 원주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(안)	행정지원과
서대문구와 베트남 빈증성 디안시 간 자매결연 체결에 관한 동의(안)	행정지원과
청년쉐어하우스 「청년누리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사회복지과
「구립어린이집 운영」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	가족정책과
서대문구 2024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(안)	재무과

부 의 안 건 명	주관부서
<p>홍제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(안) 의견청취(안)</p> <p>※ 자세한 안건 내용은 주관부서에서 별도 주민공람 예정(2024.4.17.)</p>	<p>홍 제 지 구 활 성 화 추 진 단</p>
<p>예비비 지출보고</p>	<p>행 정 지 원 과</p>
<p>예비비 지출보고</p>	<p>자 치 행 정 과</p>
<p>서대문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안</p>	<p>사 회 복 지 과</p>
<p>예비비 지출보고</p>	<p>도 로 과</p>

붙임 : 안건 내용 각 1부. 끝.